

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033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II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5호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)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·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'20년도 말 조성액(a)	'21년도 기금운용계획		'21년도 말 조성액(e) (d=a+b-c)	융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		
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	1,000,000	1,000,000	450,000	1,550,000	0	1,550,000

※ 집행(사용)계획은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IV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[참고자료1]

-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
-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

- 붙임 1.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 2.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세부사업 계획안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3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기금 개관

-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·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의 확대·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·활성화를 위해 ‘DMZ 생태평화체험’, ‘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,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

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19.7.18.)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·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.

나. 수입·지출 계획

-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, 예치금 회수 10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14조제2항에1)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용자성 사업비 4억 5천만원, 예치금 15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,

비용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지역 역사유적지, 교육기관, 생태환경 등 현장체험학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북측의 교육당국, 학교, 학생 대상 교육분야 교육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

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1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2)

1) 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

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2) 제1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

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한편 지출계획 중 ‘북한체험학습추진’ 사업은 북한 지역 탐방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체득하고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지역 “교원 사전답사단 파견” 및 “학생 대상 시범 현장체험학습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또한 ‘남북교육교류협력’ 사업은 남북교육교류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,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, 관련 단체 사업제안 및 심사,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, 함께 만드는 평화·통일 페스티벌 운영 등 대북교류협력 연계 및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

[표1] 사업 주요내용

구 분	북한체험학습추진	남북교육교류협력
사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사전답사단 파견 [1단계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, 사전 안전 점검 등 - 답사지: 금강산, 개성(공단),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- 답사단 구성: 관내 교원 40명(공모를 통한 참여 교원 선발) ○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시범 추진 [2단계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 지역 관광 재개 및 안전 확보 이후 추진 - 답사지: 금강산, 개성(공단),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- 대상: 관내 고등학생 40명(※ 상황에 따라 사제동행으로 추진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북교류협력 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- 서울-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및 생태·환경 공동체험 - 남북 학생 간 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 교류 - 북한 학교, 학생 등 대상 교육분야 인도적 지원 ○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○ 함께 만드는 평화, 통일 페스티벌 운영 ○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
지출계획	100,000천원	280,000천원

- 이 중 ‘북한체험학습추진’은 학생과 교원이 북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의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하고 체계적인

사전답사를 통해 북한 체험학습활동의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. 끝으로

- 동 운용계획안은 동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 - 이와 함께 남북교류 사업이 교육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, 사회, 문화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「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관계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0.4.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1.29., 일부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

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)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

2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

3.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
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